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7 선고 2024가단504873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1. A조합

2. B조합

3. C조합

4. D조합

5. E조합

6. F조합

7. G조합

8. H조합

9. I조합

10. J조합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, 담당변호사 정태근, 강수현

피 고 1. K

2. 주식회사 L

3. M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, 원고 A조합에게 138,888,890원, 원고 B조합에게 63,888,890원, 원고 C조합, I조합 및 J조합에게 각 66,666,666원, 원고 D조합에게 100,000,000원, 원고 E조합에게 130,555,556원, 원고 F조합에게 127,777,778원, 원고 G조합에게 113,888,888원, 원고 H조합에게 125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. 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

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구자광

별지

- 1) 청구취지 중 '소장 부분 송달일'은 '소장 부분 최종송달일'로 선택한다.